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1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 민형배 • 이정문 • 김태선

이수진 • 주철현 • 전용기

박지원 • 이훈기 • 부승찬

권칠승 · 윤종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

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법률 제 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예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 령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 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 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의 감

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
- 2. 제3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 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은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예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의 제한 또는 영 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 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
	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 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2조제1호나무에 따른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 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 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 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나한 은행
- 2. 제3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
 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은
 행

(5)·(6)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